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최유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9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26일

발 의 자: 최유희,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67명)

1. 주문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이사장·사무국장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함
 - 가. 이사장 임명 절차 및 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나. 사무국장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자본잠식으로 인한 기금 고갈의 우려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사장 임명 및 사무국장 채용을 진행하였음
- 제6기 공제회 임원 구성 계획안에 따르면 15인의 이사 중 8인을 공제가입자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계획안과 다르게 추천 요청은 7인에게만 의뢰하여 이사 1인이 부족한 상태로 구성함
-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공제가입자에게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공제가입자 중 1인이 교육감의 수행비서 출신 측근을 추천하는 임원 추천서를 발송하였고, 추천자가 작성해야 할 추천서를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셀프 추천을 시도한 정황도 있음
- 사무국장 채용의 경우 인사규정상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교육감 2인 추천 후 1인이 미응시하는 형태의 특별채용으로 진행된 적도 있으며, 공제회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짧은 기간 공고하고 삭제하여 지원자를 줄이거나 심사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진행한 의혹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기관 부실 가속화 및 서울시민·학생의 추가적 피해를 막고, 채용 비리 근절 및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

4. 이송처

- 감사원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자본잠식으로 인한 기금 고갈의 우려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기금 운영 및 학교 안전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공제회는 이사장 및 사무국장 임명에 있어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전문성 및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교육청과 공제회의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기관 부실 가속화 및 서울시민·학생의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감사원에 학교안전공제회 채용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2023.1.25.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통상적인 이사(장)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명되는 과정 및 절차도 부적절하였습니다.

학교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제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과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전문의,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7.28.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제6기 임원 구성 계획안에 따르면, 15인의 이사 구성 중 ‘공제가입자(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자격으로는 8인을 구성하게 되어있으나, 교육청은 계획과 다르게 7인의 공제가입자에게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사 정원 15인 중 1인이 부족한 상태로 6기 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한편, 2023.1.17. 교육청에서 공제가입자에게 추천 요청을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공제가입자 중 1인이 교육감의 수행비서 출신 측근을 추천하는 임원 추천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게다가 추천자가 작성해야 할 추천서를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셀프 추천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문서 위조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공제회 이사 자격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을 대표하는 자’에 속하는 학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변호사, 전문의 등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됐으며, 추천 전형인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 자격이더라도 이와 동등한 자격 수준이 요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전의 5기 임원 구성을 보더라도 최소한 학교장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임 이사장의 직전 최종 경력은 학교 안전·기금운용과 무관한 직무의 5급 상당 별정직이었고, 학위·연구 분야도 이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자격 및 임명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모두 부적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진행된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도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진행된 의혹이 있습니다.

공제회 정관에 의하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사무국장 채용은 교육감의 2인 추천 후 1인이 면접에 미응시하여, 사실상 특별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사무국장 채용의 경우 외견상 공개채용 형식을 취했으나 일간신문에도 공고하는 등 폭넓게 알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

홈페이지에만 짧은 기간 공고하여 의도적으로 지원자를 줄인 정황도 엿보입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숫자와 구성을 교육감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도록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사무국장 채용 역시 공제회 홈페이지에만 짧은 기간 공고하고 삭제하여 1인 단독 응시·채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 구성 역시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2015~2017년 사무국장 채용은 명백하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채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무국장 채용 모두 표면적으로는 공개채용을 표방하였으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응시자를 줄이거나 외부 면접위원을 현직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특별채용을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채용된 사무국장이 모두 서울시교육청 행정국장, 총무과장 등 교육청 퇴임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는 사무국장의 채용과정 및 절차의 부적절함을 숨기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다른 일반공고는 그대로 둔 채, 사무국장 채용 공고만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채용은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비전문가 채용에 따른 부실 운영 피해는 온전히 서울 시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채용 비리 근절 및 기관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3. 5.

서울특별시의회 일동